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자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18번길 17, 1층(망미동)
3.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네이버 기관 위치 지도, 기관 사진 등록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기관찾기)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오프라인 모집 :

㉮ 부산 전역, 경남 전역 등 구보 홍보(전단지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각 지역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요양원, 방문요양관련자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③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계약서, 급여제공안내문, 노인인권보호지침,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예방수칙, 상호존중수칙, 비상연락망, 등) 를 제공한다.

자람노인복지센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혹은 예정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기관과 대상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장기요양 수가변경, 급여이용량변동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 혹은 수가변경계약서 및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개정 2026.01.01.>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 가산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개정 2026.01.01.>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다. 등급별 월 한도액<개정 2026.01.01.>

분류번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주야간보호급여를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산정한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달에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④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내에 문자 메시지로 이용료를 발송한다.
⑥ 문자 발송 후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 또는 직접으로 전달하여 이용료 및 사용내역을 상세히 통보한다.
⑦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요청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내역서(영수증)'를 발급한다.

***그밖의 비용 부담액**

아래와 같은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그 비용 100% 금액을 대상자 및 보호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식사준비 재료비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 제공 시간을 대상자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자가 장기입원 및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으로 대상자 욕구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기관은 **메리츠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보험증서 사본 기관내부 게시)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배상책임보험을 바탕으로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 사고당 면책금 1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